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의 違憲內容은 무엇인가

An anti-constitutional act of Engineering promotion law

李　　大　潤*
Lee, Dae Yoon

1. 概　　要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2. 要　　旨

과학기술처에서 제정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 국가는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술용역육성법(1983. 12. 31. 개정법률 3691호)을 1992. 11. 2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1992. 11. 25. 법률 제4501호)으로 명칭을 바꾸어 개정하고, 1993. 5. 26.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12342호)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 13889호)으로, 같은 날 기술용역육성법 시행규칙(1991. 4. 26. 총리령 제 386호.)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1993. 5. 26. 총리령 제 420호)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등의 개정과정에서 종전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인력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행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 기술용역육성법에서 규정된 기술용역업무나 기술사업에서 규정된 기술사업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아래에서도 엔지니어링 활동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고유업무로서 기술사가 주체가 되고 일반기술자는 그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 이상”이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술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일반기술자, 기사1급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게 기술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

* 技術士·韓星技術研究所長

의적으로 기술사와 기사1급 또는 학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또는 2호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권장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의무를 지게한 기술사법의 입법취지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게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기술사에게 보장된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22조 과학기술자의 권리 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2) 국가가 기술사 제도를 두어 기술사와 일반기술자를 구별하여 양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기술사를 그들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술사에게 보장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술사법이 합리적 근거에 기하여 기술사와 기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차별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기술사법 제2조)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은 ①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1년이상 종사한 자,

이러한 자가 소정의 국가검정(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기술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사 자격취득 요건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등이 국가검정에 합격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기사1급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4조)

(3) 기술사는 기사1급이나 학사 등 일반기술자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그 책임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사의 업무는 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기술사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서독, 일본, 카나다등 외국의 경우에도 기술사업무를 기술사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바,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기술사등록법을 두어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가 아닌 자는 기술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설계 및 감리 등 위탁받은 업무를 고도의 전문기술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술사 업무를 일반기술자에게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사와 일반기술자의 업종분업화의 원리에 반합니다. 또 위규칙에 의하면 기술사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신고를 하고 엔지니어링업무를 하려면 기술사를 포함하여 직원의수가 10명이 될때까지 일반기술자 즉 기사1급 내지 학사학위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바, 일반기술자는 기술사의 보조원으로서 기술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자임에 비추어 그 고용을 의무화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위 규칙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은 평

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기술사와 기사1급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를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기술사법이 이와 같이 기술사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사가 위와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및 감리등 기술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업무에 관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저작물인 설계도서등에 대한 기술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일반기술자 즉 기사1급 또는 학사10명 이상이 모이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하고, 기술사의 고유업무인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기술자도 그 업무상 작성한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서명날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인 기술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結 論

엔지니어링(Engineering 또는 Consulting)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의 계획, 연구, 조사, 설계, 감리, 자문, 지도등을 수행하는 기술용역업무이므로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 또는 시공업과는 독립된 전문업종이고, 엔지니어링기술은 민간전문업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국내기술수준과 보수는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모든 산업의 생명이므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중추적 핵심기술의 튼튼한 기반위

에서 첨단기술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은 전문기술자의 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기술사 등록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공공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기술사 등록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법률로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이 기술사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을 받지 않은자는 엔지니어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기술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가 될 수 있고, 기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자를 기술사라고 하며, 등록기술사는 직접 또는 그의 감독하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기 때문에 기술사 보조원등 하위직 엔지니어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57년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기술사의 자격과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적등록을 필한자는 기술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과학기술청장관이 시행하고, 과학기술청에 비치된 기술사등록부에는 회사명칭과 소재지 및 기술부문등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사등록자는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술사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적정하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기술사법을 제정하여 선진국의 기술사 등록제도를 일찌기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사의 자격과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이 분산되어 있으므로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자격시험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등 기술사의 업무와 등록제도는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하여야 하며, 각 부처에서는 행정지도로서 기술사 활용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